해외 경쟁정책 동향

미국

MS, EU 반독점 규제에 항소

EU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 내린 반독점 결정과 관련하여 6월초 항소 시한을 앞두고 MS의 본격적인 반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 EU 측은 MS에 4억 9,700만 유로(6억 100만 달러)의 벌금과 더불어 경쟁사들과의 정보공유 및 윈도우 제품과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의 끼워팔기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MS는 유럽법원에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과 9월 사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MS 제품의 판매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윈도우 XP OS에 대한 위원회의 자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규제방침이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XP 제품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MS에 대한 규제 요청이 실패할 경우 위원회는 약 2년 동안 XP 제품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9일 MS는 반독점 행위와 관련하여 EU의 공식 판결문을 접수했다. EU 규제체계에 따르면 MS는 유럽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6월 8일까지 2개월 10일이라는 기간 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2009년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MS의 규제명령 유예 요청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보 베스터도르프(Bo Vesterdorf) 법관은 주요 논점에 있어 제시된 자료들이 소송절차 진행에 불충분할 경우 구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판결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8월 휴가 시즌 이전까지 유예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MS 측은 이번 항소에서 경쟁사와 제품 정보를 공유하거나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이 제거된 윈도우 제품처럼 불완전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MS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MS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계약은 경쟁사들과의 정보공유와 같은 EU위원회의 규제 방침이 부분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로서는 MS가 5월말까지 경쟁사들과의 정보공유 방안을 유럽위원회 측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MS가 명령 유예를 요청할 경우 법원의 판결 이전에 이를 따라야할 의무는 없어진다.

2004. 4. 16. CNet.com

FTC, 음란성 스팸메일에 대해 규제

올해 5월 19일부터 미국에서 뿌려지는 음란성 내용이 담긴 스팸메일에는 제목란에 "SEXUALLY-EXPLICIT:"라는 경고표시를 붙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부과된다. 지난 2003년 의회에서 통과된 스팸법(The CAN-SPAM Act)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스팸에 대해 표시 또는 경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표시를 하는 이유는 메일 수령자로 하여금 음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려서 원치 않는 메일에 대한 필터링을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시를 제정토록 한 것은 의회가 스팸법을 통해 FTC에게 부여한 몇 가지 권한 중의 하나이다. 2003년 12월 16일에 발효된 스팸법에서는 FTC가 법 제정 후 120일 이내에 음란성 메일에 대한 경고표시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C는 경고표시를 제정하여 2004년 1월 29일에 연방관보에 공고하였고, 지난 2월 17일까지 소비자들로부터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

결국 FTC는 음란성 메일에 대한 경고표시를 "SEXUALLY-EXPLICIT:"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따라서 음란성 이미지가 담겨 있는 전자메일은 그 표제나 이와 유사한 이른바 "brown paper wrapper"에 이러한 표시를 해야만 한다. brown paper wrapper란 메일 수령자가 어떠한 메일을 열어 보기 전에 먼저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최종 결정된 경고표시는 당초의 것에서 다소 변경되었다. FTC는 원래 "SEXUALLY-EXPLICIT-CONTENT:"라는 표시를 하고자 했으나, 경고표시는 길게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전송자의 의도를 제목 표시란에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면 충분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표현을 가능한 한 짧게 수정했다. 또한 최종 경고표시는 미국표준문자코드(ASCII)로 해야 한다.

한편 연방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문자로 표시된 내용에도 이 경고표시를 붙이도록 했다.

2004. 4. 13. 연방거래위원회

독점금지국, 신임 부국장 임명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은 지난 3월 31일 Thomas O. Barnett씨를 민사집행부장으로 새로이 임명했다. Barnett씨는 민사집행부 소속의 세 개 송무 부서를 이끌게 되었다. "신임 부국장은 기업결합에 관한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송무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독점금지 관련 소송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국장은 말했다. 또한 "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독점금지 집행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독점금지국으로서는 매우 행운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0년부터 워싱턴 D.C.의 Covington & Burling 법률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독점금지와 소비자보호 분야의 일을 했으며, 여러 회사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기도 했고, 1997년에는 같은 회사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는 독점금지 분야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스포츠법 및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과 관련된 일도 해왔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는 제4연방항소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있었으며, 죠지타운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기도 했다.

Barnett 신임 부국장은 1985년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에는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9년 하버드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이와 함께 독점금지국장은 지난 4월 1일에는 David A. Higbee씨를 사무처장(Chief of Staff) 겸 부국장으로 임명했다. 이번에 새로이 마련된 자리에서 Higbee씨는 독점금지국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점금지국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

리하는 부국장급의 자리에 Higbee 씨를 임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사무처장이라는 직함이 의미하듯이 Higbee씨는 여러 부서들간의 업무를 조율할 것이며, 모든 중대한 문제들을 그와 의논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Higbee씨는 2003년 이후로 백악관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해 왔으며,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등의 기관과 관련된 일 및 국가안보 등에 있어서 자문을 해왔다. 그는 이미 2001년에서 2003년까지 독점금지국에서 재직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에는 경제분석, 국제업무, 형사집행, 규제업무 및 민사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사집행부는 송무1, 2, 3과로 구성되어 있다.

2004. 4. 1. 연방법무부

EU

EU위원회, 반독점 집행규칙 개정

EU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반독점 집행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정했다. 소송절차와 역내 경쟁당국간의 공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개정안은 카르텔 금지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유럽 조약 제81조와 제82조를 집행하는 반독점 집행절차 규칙(Regulation 1/2003)을 보완한 것이다. 통상 이들을 포괄하여 'Modernisation Package'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작업은 위원회에 새로운 독점금지 규제력을 부여하여 유럽연합을 더욱 확대시키고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이미 40년 전에 유럽 내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경험이 없을 당시에 제정된 각종 법령들을 대신할 것이다"고 몬티 경쟁위원은 말했다.

이번 새로운 반독점 집행 시스템은 유럽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익을 향상시키고 유럽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불필요하게 복잡한 절차에 얽매이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규칙1/2003에 의해 1962년에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불필요한 절차에 불과하게 된 사업협정에 있어서 위원회에 대한 신고제도는 폐지된다. 이러한 신고는 미국 등의 다른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회원국의 법원과 경쟁당국들은 유럽 경쟁법의 집행에 있어서 더욱 더 그 역할이 중대해지게 되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모든 당국자들은 경쟁법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에 채택된 위원회 규칙과 6개의 고시는 규칙1/2003을 보완하며, 나아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 체계를 이루게 된다.

이 밖에도 Modernisation Package에는 다음과 같은 문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 반독점 집행절차에 관한 위원회 규칙

여기에는 청문회, 소송절차 및 자료수집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들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② 거래의 개념에 관한 가이드라인

거래의 개념은 유럽 경쟁법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인 관할권을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회원국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협정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회원국의 법원과 경쟁당국들이 유럽 경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새로운 집행절차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따라 법집행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다.

③ EU위원회와 회원국 법원간의 협력에 관한 고시

유럽 조약상의 경쟁법 규정들은 회원국의 법원이 사업자나 EU회원국민들에 대해 집행할 때에 그 효력이 발행하게 된다. 새로운 집행절차 시스템이 가동되어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적집행(private enforcement)을 막는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이 제정된 EU위원회와

회원국 법원간의 협력에 관한 고시는 회원국 법원이 EU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수단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특히 회원국 법원들이 유럽 경쟁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EU위원회에게 정보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④ 사업활동에 있어서 비공식적 지도에 관한 고시

유럽 조약 제8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제도의 폐지가 새로운 집행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인 반면, EU위원회는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자와의 의견교환은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특히 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사업활동이나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것이 경쟁법 위반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조언(guidance)을 제공할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이른바 Guidance letters를 통해 조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Guidance letters는 유럽 조약 제81조, 제82조와 관련하여 어려운 사례가 발생한 경우 작성되며, 시기적으로 위원회의 집행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작성된다.

⑤ EU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 진행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간결한 방식으로 위원회에 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공식적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과정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는 소비자나 사업자가 경쟁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접한 경우에 이를 위원회에 알리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럽 조약 제81조와 제82조의 적용을 위한 집행절차 개정 작업은 공식적으로 1999년에 EU위원회에서 제81조와 제82조 적용의 현대화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2000년 9월에 위원회는 규칙 17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였고, 의회에서 이에 관한 집중적인 검토작업을 한지 2년이 훨씬 지난 2002년 12월 6일에 새로운 규칙(Regulation 1/2003)으로 탄생되었다.

2004. 3. 30. EU위원회

유럽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시정조치 명령 및 제재금 부과

유럽위원회는 5년간 계속되어 온 심사 끝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룹이 PC OS 시장에서 대부분 독점상태를 지렛대로 하여 work group server OS 및 media player 시장에도 이용함으로써 EU 경쟁법에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위원회는 동 위반행위가 현재도 역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동 사의 경쟁사업자 제품이 대부분 PC에 탑재되어 있는 windows OS와 「교신」(talk)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interface를 120일 이내에 경쟁사업자에게 개시하도록 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90일 이내에 windows media player를 함께 넣지 않은 버전의 windows OS를 PC 제조업자(직접판매할 경우는 최후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더욱이 마이크로소프트에는 EU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 총 4억 9,700만 유로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지배적기업은 자신들의 비지니스 방법이 (상품 · 서비스의) 진가에 의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도록, 또한 소비자와 혁신이 침해되지 않도록 확보할 특별한 책임을 가진다. 또한 금일의 결정은 관계시장에 대해 공정한 경쟁조건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강대한 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기업의 장래 행동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고 유럽위원회의 마리오 몬테 경쟁정책 담당위원은 언급했다.

유럽위원회는 5년을 넘어 철저하면서도 대규모심사 및 3회에 걸친 이의고지서 송부를 거쳐 금일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그룹이 PC OS에서 독점에 가까운 상태를 남용함으로써 EU경쟁법(EC조약 82조)에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OS가 탑재된 PC와 비마이크로소프트사제

인 work group server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또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던 windows media player를 대부분 PC에 탑재되어 있는 windows OS에 끼워팔기 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동 위법행위에 의해 기업의 IT 네트워크의 심장부인 work group server OS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동 위법행위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모두 소멸시켜 버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는 media player 시장에서의 경쟁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이러한 계속 진행중인 남용행위는 혁신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작용하고, 또한 경쟁의 과정(process)과 소비자를 해하고, 소비자는 결국 부족한 선택과 높은 가격에 직면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5년반에 걸쳐 여전히 계속 진행중인 이러한 매우 중대한 남용행위에 대해 4억 9,720만 유로의 제재금을 과했다.

시정조치

유럽위원회는 공정한 경쟁조건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하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

상호운용성에 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20일 이내에 비마이크로소프트제 work group server가 windows가 탑재된 PC 및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와의 충분한 상호운용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interface 문서를 개시해야 한다. 이것에 의해 경쟁사업자는 work group server OS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개시된 정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제품의 새로운 버전을 시장에 도입할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야한다.

이 인터페이스 정보 중 어느 쪽인가가 유럽경제지역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일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합리적인 대가를 얻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개시명령은 인터페이스 문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windows의 source · code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후자는 상호운용성이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끼워팔기에 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90일 이내에 windows media player가 탑재되지 않은 버전 windows OS를 PC 제조업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끼워팔기를 해소하는 동 시정조치는 소비자가 음악 · 동화재생소프트가 탑재되지 않은 PC와 OS를 수단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위원회의 시정조치 결과, 그와 같은 상품을 조합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바라는 것을 반영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 media player를 탑재한 버전의 windows OS를 제공할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unbundle 된 (windows media player가 탑재되지 않은) 버전의 windows의 매력과 기능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상업적, 기술적 또는 계약상의 방법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제조업자가 windows media player가 탑재된 windows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격을 인하해서는 안 된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시정조치가 반트러스트 위반을 종결시킬 것이고, 본 건 위반에 대응한 것이며,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장래의 행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위원회는 동 결정의 유효 · 적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감시수탁자(Monitoring Trustee)를 임명하기로 한다. 감시수탁자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인터페이스의 개시가 완전하고도 정확한 것인지, 또한 2가지 버전의 windows가 성능면에서 동등한지를 감시하게 된다.

심사

1998년 12월 미국 기업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windows OS가 탑재되어 있는 PC

와 적절하게 「교신」하는 것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그것에 의해 work group server OS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인터페이스 정보를 썬에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유럽위원회의 심사가 명확히 한 바에 의하면 썬은 당해 정보의 제공이 거절된 유일한 회사는 아니며,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이러한 불개시는 경쟁사업자를 시장 밖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것은 특히 신뢰성, 안전성 및 스피드 면에서의 경쟁을 2차적인 지위로 내쫓는 것이고,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을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 결과로서 압도적 다수의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인터페이스 정보의 불개시에 의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제품에 유리하게 되도록 인위적으로 그 선택을 변화시켰다고 유럽위원회에 회답했다. 조사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회답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에게 유보하고 있는 상호운용성의 유리함과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시장점유율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유럽위원회는 2000년 직권에 의해 동 조사를 확대하고, windows 2000과 windows media player의 끼워팔기 효과를 조사했다.

동 심사의 결론은 windows OS에 끼워팔기 되므로써 대부분의 PC에 windows media player가 탑재되는 것이 음악, 영화, 기타 다른 media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contents provider가 경합하는 음악·동화 재생소프트용 상품을 개발하는 인센티브를 인위적으로 감살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결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windows media player 끼워팔기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시장을 폐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좁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가격과 품질과는 관계없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입수 가능한 데이터는 이미 windows media player 및 windows media 기술에 유리하게 되는 명확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위원회에 의한 개입이 없으면 windows에의 windows media player 끼워팔기는 최종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유리하도록 시장을 「뒤집어 놓을」("tip")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암호화기술, 인터넷을 통한 음악배신(配信)소프트, 디지털저작권관리 등 관련한 디지털미디어 분야의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windows media player 끼워팔기가 PC OS에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부분의 독점상태를 부여하는 것으로, 장래 마이크로소프트가 흥미를 가지는 윈도우즈에 끼워팔기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기술에 있어서 혁신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좁게 하는 보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한 예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주석

유럽위원회는 국경을 초월한 거래 및 경쟁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EU 전역에서 제한적 상행위 및 독점력 남용에 관한 EU경쟁법을 집행한다.

유럽위원회는 기업 행위의 시정을 강제하는 동시에 반트러스트 위반에 대한 전세계의 년간매출액 10%를 상한으로 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결정은 룩셈부르크 유럽제1심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유럽위원회 결정에 관한 Q&A

Q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회사이다. 왜 유럽위원회가 미국 회사의 행위가 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A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제품을 EU 지역을 포함, 전세계에서 판매하고 있다. EU 지역은 미국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시장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 기업이 대서양

의 반대측에서 사업활동을 할 때 미국법을 준수해야 할뿐만 아니라 EU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Q 마이크로소프트는 EU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확하게는 무엇을 해야하는 것인가?

A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경쟁사업자의 서버 제품이 윈도우즈 OS가 탑재된 PC와 동등하게 「교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동등한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제품과) 경쟁할 수 있게 되기 위해 필요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프로토콜의 사양(specifications for the protocols)을 개시할 것」을 명령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windows media player가 탑재되지 않은 버전의 windows OS를 제공해야 한다. 동 명령은 최종사용자에게 직접판매 되는 windows 및 OEM업자(즉, PC 제조업자)에게 라이센스 되는 windows에 적용된다.

Q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야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법무부가 합의한 내용을 뛰어넘고 있는 것은 없는가?

A 미국의 사건은 금번 EU의 사건과 일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미국에서의 화해가 스스로의 염려에 대응하는 것이었던 경우는 그 점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EU의 사건에서는 미국과는 다른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럽 단일시장에서 EU법을 관장한다는 유럽위원회의 책무를 근거로 하면 시정조치는 EU 사건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된다. 유럽위원회는 상호운용성에 대해서, 특히 미국 사건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 일정 서버간 프로토콜(server-to-server protocol)의 개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끼워팔기에 관해서는 미국에서의 시정조치는 code removal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시정조치는 끼워팔기의 책임이 아니라 독점 유지에 대한 것으로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Q 유럽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한 것인가?

A 유럽위원회와 미 법무부는 일정기간 마다 회합하는 등 각각의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회합은 협력적이고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공통의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익한 것이었다.

Q 마이크로소프트는 즉시 제재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A 제재금은 결정통지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불할 필요가 있다.

Q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불한 제재금은 어디로 가는가?

A EU 중앙예산(central budget)으로 들어간다.

Q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제1심법원에 불복신청을 하고 가결정을 구한 때도 제재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A CFI에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의 관행으로서 기업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재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은행보증(bank guarantee)을 제공하고 있다. 그 후 지불할 제재금에는 이자가 붙는다. 이자율은 결정이 채택된 월의 최초 일에 유럽중앙은행의 주요 operation rate에 3.5%를 상승시킨 것이고, 본 건의 경우는 5.5%가 된다. 이것은 모든 제재금 결정에 있어서 통상의 관행이다.

Q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위원회가 설정한 기간내에 특정 정보를 개시하지 않았다거나 windows media player를 탑재하지 않은 버전의 windows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 유럽위원회의 결정에서 나타난 시정조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 경험상 기

업은 그와 같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에게는 본 건이 그러한 사례와는 다르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기업이 결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daily penalty payments)이 부과되게 된다.

Q 본 건 시정조치의 지리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 유럽위원회는 EEA 역내(=EU 회원국+노르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및 리히텐슈타인)에있어서 유력한 경쟁 유지를 소관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예를 들어 결정에 있어서 관련지리적 시장을 전세계로 획정하고 있다고 해도 시정조치의 지리적 범위는 EEA의 범위가 된다.

Q 유럽위원회의 본 건 결정은 경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A 유럽위원회는 각각의 기업의 특정 이익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진가에 의한 경쟁이 보호되는 것을 확보한다는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소비자가 혜택을 받고 혁신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할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그 결정에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신고의 모든 요소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Q 본 건에서 유럽위원회의 법이론은 어떠한 점에서 신기한 것인가?

A 본 건의 법적 기초는 어떠한 점에서도 신기한 것은 없다. 본 건 결정의 두 가지 부분과도 유럽 법원의 판례와 일관한 사고양식에 따르고 있다(상호운용성에 있어서는 특히 Commercial Solvents 사건, Telemarketing 사건, Magill 사건. 끼워팔기에 있어서는 특히 Hilti 사건 및 Tetra Pak 사건).

Q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시장에도 일반 경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유럽위원회가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 여하한 반트러스트 분석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산업의 특질을 (그것이 「하이테크」일수도 「올드 이코노미」일수도) 고려해야 한다. 성질이 계속 변화하는 것은 도달한 특정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건전하게 행해지는 반트러스트 분석을 「뉴 이코노미」 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시장의 특성(예를 들면, 네트워크 효과, 신청에 의한 참입장벽 등)은 당해 시장에서 「전통적 산업」과 비교해서도 고정화 된 시장지배력 상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Q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시해야 하는 인터페이스 정보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A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ource code의 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위원회는 결정에 의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정보가 EU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된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한 본 건 결정은 관련 판례에 따라 본 건의 예외적 상황(마이크로소프트의 압도적인 지배, 인터페이스 정보의 불가결성, 시장에서의 경쟁소멸의 위험성)이 그와 같은 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Q 마이크로소프트가 당해 정보의 제공으로 매우 고액의 로알티를 설정하는 것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유럽위원회는 어떻게 확보하는가?

A 당해 정보의 어느 것이든 EEA에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합리적인 대가를 얻을 권리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보의 제공으로 고액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은 유럽위원회하의 감시수탁자(Monitoring Trustee) 역할이 된다.

Q 본 건 결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 룰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

A 본 건 결정은 유럽공동체의 국제

적인 의무, 특히 지적재산권의 무역의 측면에 관한 WTO협정(TRIPS협정)과 충분히 일관된다. TRIPS협정하에서는 유럽위원회는 결정에 있어서 특정된 지배적지위 남용을 종결시키는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Q windows media player의 unhandling(windows OS에서의 차단)에 관하여, 본 건 결정은 미국법과 정합적인가?

A 그렇다. 유럽위원회는 windows media player 끼워팔기에 의한 반경쟁적 효과가 어떠한 경쟁촉진 효과를 능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합리의 원칙」에 따랐다. 이것은 확실히 2001년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정한 끼워팔기 사안의 (분석의) 범위이다.

Q 음악 · 동화 재생소프트에 관한 금번의 시정조치는 windows OS에 통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장래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개의 버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A 아니다. 장래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옳고 그름에 비추어 검토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건 결정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끼워팔기에 관한 장래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한 범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Q 결정본문은 언제쯤 공표될 예정인가?

A 영어판 결정(본 건 결정의 공식언어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상의 비밀에 관한 부분 삭제후) 경쟁총국의 웹사이트상에서 열람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프랑스어 및 독일어 번역판에 대해서도 어느 경쟁총국의 웹사이트상에서나 열람 가능하게 된다. 결정의 개요에 있어서는 모든 언어의 버전이 유럽공동체관보 L시리즈에서 공표될 예정이다.

Q 유럽위원회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화해에 근접하고 있는가?

A 본 건은 문제 해결로의 현저한 진전이 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로서는 화해에 관한 의논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유럽위원회는 시장에서의 이와 같은 강대한 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기업의 장래 행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4. 3. 24. 유럽위원회 발표문
일본 월간 「공정취인」 2004. 4월호 발췌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독점금지법의 내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 경제 · 사회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점금지법의 조치 체계 및 독점 · 과점 규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2002년부터 「독점금지법 연구회」(단장 미야자와 켄이치 히토츠바시 대학 명예교수)를 운영해 왔다. 그리고 작년에 이 연구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징금 산정율의 인상

(1) 현행의 산정율(제조업 등: 대기업 6%, 중소기업 3%, 도매업: 1%, 소매업: 대기업 2%, 중소기업 1%)을 각각 2배 정도로 인상한다.

(2) 과거 10년 이내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적이 있는 위반 사업자의 경우는 상기 (1)의 산정율에 5할 정도 가산한 산정율을 적용한다.

(3) 과징금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는 과징금 액수로부터 벌금액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한다(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등은 해당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중소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조합 등은 중소기업 산정율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5) 과징금의 산정기간의 상한을 3년간에서 4년간으로 연장한다.

2. 과징금 적용대상 범위의 재검토

(1) 현행의 대상 행위를 개정하여 과징금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은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거래제한으로서 대가와 관련되는 것 또는 실질적으로 공급량, 시장점유율 혹은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여 대가에 영향을 주는 것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배함에 의한 사적독점으로서 해당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혹은 역무의 대가와 관련되는 것, 또는 실질적으로 해당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혹은 역무의 공급량, 시장점유율 혹은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대가에 영향을 주는 것

(다) 구입과 관련되는 부당한 거래제한으로서 대가와 관련되는 것, 또는 실질적으로 수요량, 시장점유율 혹은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대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2) 과징금 산정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역무에 있어서 「해당 상품 또는 역무」를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위반사업자가 공급한 상품 또는 역무」라고 개정한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사적독점·부당한 거래제한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과징금 감면제도의 도입

(1)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 사업자(부당한 거래제한을 실시한 사람으로 한정. 이하 동일)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공정위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단독으로 및 최초로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사실의 보고 등을 했을 경우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했을 경우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사실의 보고 등을 했을 경우

(2)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액수를 50% 감면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공정위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단독으로 및 두 번째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보고 등을 했을 경우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했을 경우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때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보고 등을 했을 경우

(3)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 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액수를 30% 공제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 수와 상기 (1) 및 (2)에 해당하는 사업자 수와의 합이 2를 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후 일정한 기일(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고 등을 했을 경우

(나) 상기 (가)의 보고 등을 한 이후 위반행위를 중지했을 경우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때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보고 등을 했을 경우

(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1)(가), (2)(가) 또는 (3)(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등을 받았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그 취지를 서면에 의해 통지해야 한다.

(5) 상기 (1)에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1)에서 (3)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보고 등을 허위로 했을 경우

(나) 다른 사업자에 대해 상기 2(1)에서 규정한 부당한 거래제한을 할 것을 강요하거나 또는 다

른 사업자가 해당 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6) 상기 (1)에 의해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의 납부를 명령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과징금 감면제도는 기업의 자율준수 노력을 독려하고, 위반행위의 자발적 중지를 촉구하여 위반행위의 계속·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의 자율준수 노력 그 자체를 과징금 감면제도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범칙조사 권한의 도입

(1)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직원(이하 '위원회 직원')은 범칙 사건(제89조로부터 제91조까지의 죄와 관련되는 사건을 말함. 이하 동일)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해 출두를 요구해 질문하거나, 소지 물건 등을 검사하거나, 또는 임의 제출 물건 등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한다.

(2) 위원회 직원은 범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재판소 등의 재판관이 미리 발하는 허가장에 따라서 임검, 수색 또는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칙 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었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한다.

(4) 검찰총장이 범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보고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제74조)을 폐지한다.

(5) 제89조로부터 제91조까지의 죄와 관련되는 소송에 대해서, 제1심 재판권을 도쿄 고등재판소를 관할재판소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각 지방 재판소와 함께 각 고등재판소 소재지의 지방재판소 및 도쿄 지방재판소의 관할에도 속하는 것으로 한다.

범칙조사 부문과 행정조사 부문 사이에는 국세·증권거래위원회에서와 같이 방화벽을 마련한다(구체적으로는 직제상 소관사무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리를 규정함으로써,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5. 벌칙 규정의 재검토

(1) 법인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의 위반행위로 인한 배제조치명령에 대한 위반의 죄와 관련되는 것을 3억엔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2) 제4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입회검사, 보고·제출 등의 명령)와 관련되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함과 동시에, 양벌규정의 대상으로 한다.

6. 심판수속 등의 재검토

(1) 제3조, 제6조, 제8조, 제19조, 제4장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권고 또는 심판개시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배제조치명령을 하도록 한다.

(2) 배제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수령자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 미리 통보를 하여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령자는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위반행위가 이미 사라진 경우, 해당 행위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행위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현행 1년)으로 한다.

(4) 배제조치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배제조치명령서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수속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정 정도 늘린다(불변 기간으로 하지 않는다).

(5) 배제조치명령에 대해 심판 청구가 있었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배제조치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6)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경우에

배제조치와 관련되는 심판수속이 종료한 다음이 아니면 납부를 명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을 폐지한다.

(7) 과징금 납부기한은 납부명령을 송달한 날로부터 3월 후(현행 2월 후)로 한다.

(8)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된 심판수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해당 납부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하며, 심리판결로 해당 납부명령이 유지되었을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금리의 상황에 따라 설정)의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심리판결로 납부명령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는 연체금의 비율과 동률의 가산금을 부가해 환부하도록 한다.

(9) 배제조치명령이 확정됐을 경우 등에는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된 심판수속에 있어서 피심인은 해당 배제조치명령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부존재를 주장하지 못한다.

(10) 심판수속을 거친 후 심판청구에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을 때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한다.

(11) 심리판결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12) 심판관의 정원을 5명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명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13) 공정거래위원회는 심판개시 결정을 한 후 사건마다 심판관을 지정해 해당 사건에 대해 심판종결까지의 절차(보고명령, 물건의 제출명령, 조사 촉탁, 검증,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을 포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4) 위원장 또는 심판관은 기일을 지정해 심판을 지휘한다.

7.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대한 보고 규정의 재검토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대한 보고 규정(제18조의 2)을 폐지한다.

2004. 4. 1. 공정취인위원회